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SA-101(분말형 음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SA-101(분말형 음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수처리 약품, 제지용 공정약품, 산업용 공정약품 등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음용수용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삼양환경약품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286 (성곡동, 시화공단4바 505-2호)

긴급전화번호

031-433-4053

2. 유해성·위험성

가. GHS 유해·위험성 분류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해당없음

신호어

해당없음

유해·위험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해당없음

대응

해당없음

저장

해당없음

폐기

해당없음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 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보건

1

화재

0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1)	2-프로펜산 나트륨 2-프로펜아마이드 중합체(SODIUM 2-PROPENOATE 2-PROPENAMIDE POLYMER)
이명(관용명)	2-프로펜산, 2-프로펜아마이드와의 중합체, 나트륨 염(2-PROPENOIC ACID, POLYMER)
CAS 번호	25987-30-8
함유량(%)	88 이상

물질명 (2)	물 (Water)
이명(관용명)	디수소 산화물 (DIHYDROGEN OXIDE)
CAS 번호	7732-18-5
함유량(%)	12 이하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간 경우 눈꺼풀을 들어올려 15분 동안 물로 충분히 씻어내시오. 눈의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많은 양의 비눗물로 씻어 화학물질을 제거하십시오. 피부 접촉으로 인한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면 환자를 비오염지역으로 옮기시오. 노출로 인한 영향(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라. 먹었을 때	물로 입을 깨끗이 씻어내시오. 이상 증상이 의심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해당없음.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CO2, 물, 분말 소화약제, 일반적인 포말, 물분무
적절한 소화제	
부적절한 소화제	자료없음
대형 화재시	일반적인 소화약제 및 미세 물분무를 사용하십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열분해 생성물	탄소와 질소 산화물
화재 및 폭발위험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특별히 요구되는 보호구는 없음. 내화학 피복 및 보호 장갑 착용.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만약 물이 사용될 경우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므로 이 지역으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제한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대기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물에 용해 처리하여 환경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십시오.
토양	자료없음
수중	누출물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시	다량의 물을 뿌리시오.
다량 누출시	고효율 진공청소기로 잔류물을 흡입하여 제거하십시오. 추후 처분을 위해 누출물질을 적당한 용기에 옮겨 수거하여 처리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물, 습기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미세 분말을 흡입하지 마시오. 분진의 발생 및 비산을 방지하십시오. 전체환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활용한 환기를 실시하십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십시오. 물, 습기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전체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십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작업중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눈 보호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십시오.
손 보호	보호구 재질 : 고무. 손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신체 보호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십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고체 (흡습성)
색상	매우 옅은 황백색
나. 냄새	매우 옅은 오일냄새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5.5~8.5 (0.1% 수용액)
마. 녹는점/어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사. 인화점	해당없음
아. 증발속도	해당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해당없음
카. 증기압	해당없음
타. 용해도	자료없음 (수용성, 점성을 가진 액체)
파. 증기밀도	해당없음
하. 비중	0.5~0.8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0

너. 자연발화온도	해당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기술자료참조
머. 분자량	기술자료참조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중합하지 않음.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물, 습기와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질소산화물(NOx) 혹은 탄소산화물(COx) 이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 oral/ rat > 5000 mg/kg (이 물질은 쥐를 대상으로 고농도의 독성에서 유해함이 확인되지 않음.)
경피	시험 테스트 결과 피부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시험 테스트 결과 피부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화학물질의 사람 눈에 미치는 유해성, 자극성 시험 (드레이즈 테스트) 결과 각막과 동공에 어떠한 영향이 없음.
호흡기과민성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테스트 한 결과 어떠한 과민성 반응을 확인하지 못함.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테스트 한 결과 어떠한 과민성 반응을 확인하지 못함.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쥐를 대상으로 2년간 먹이로 주었을 때 건강상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를 대상으로 1년간 먹이를 주었을 때 건강상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 100 mg/ℓ 96 hr Brachydanio rerio (OECD203)
갑각류	EC50 > 100 mg/ℓ 48 hr Daphnia magna (OECD202)
조류	ErC50 > 100 mg/ℓ 72 hr Scenedesmus subspicatus (OCED201)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LogPow : 0)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소각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일반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SNF S.A.S (France)
나. 최초작성일	2010-06-29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5회
최종 개정일자	2017-05-29

라. 기타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는바, OCI-SNF 주식회사는 이 문서가 특수한 목적의 적합성이나 다른 물질과의 병용, 상업적 적용이나 표현에 대해서 어떤 보증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기술적,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